



기안용지

우송

법규 181.7 (전화번호 307) 전 권 국 정 조 환
 시 장

처리기간
 시행일자 1976. 8.
 보존년한

제 9.1



보조기관
 제 1부 식장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457 호

기안제일자 1976. 8.

경수유신참조
 유신참조
 구안참조
 발신
 시장
 본계



제목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규정

"제 1 안" (내부결재)

1. 지방세의 제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보다 공정 적법하게 처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사안을 심의위원회의 하여금 심의토록하게 하코자

2.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재정하여 벌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코자 합니다.

첨부 : 1. 문 익 안 1부.

2. 제정이유 1부.

3. 관계로문 1부.

4. 세로 1234.91-211 (76. 6. 4)로 1부. 끝.

"제 2 안"

수신 문화공보심장

제목 시보 게재.

정서

판인

발송

별첨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

특 할 것.

첨부 : 훈령 발령안 사본 1부. 끝.

"제 3 안"

수신 재무국장

참조 세무조사과장

제목 훈령 발령 통보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반

영키로 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첨부 : 훈령 발령안 사본 1부.

결재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1976
시장

197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시장 구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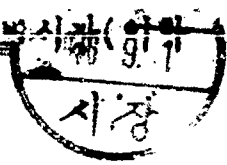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문명계 호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세 제조사청구 및 심사청구 사안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재무국장, 세정국장, 재무조사국장 및 구청 시민생활국장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지명하는 1인이 된다.



제 3조 (위원장외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된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거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의견의 청취) (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포세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제조사 청구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참고인에게 관계 행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6조 (견사 등) (1)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견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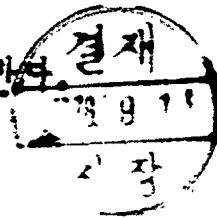
(2) 견사는 사무조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조사과소관 계장으로 한다.

(3) 견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안증서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부 181.5 -	(전화번호 75,6379)	전 결 규 정 전 결 조 사 함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시장	*31	→ 張 令 審 長 李 會 長 官
	기획감리관		
	법무담당관		
기안책임자	김 창시	조	
결수 유신 참조	후 안 참 조	발 신	시 장 봉 제
제 목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예		
*제1안 내 부 공 제			
1.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에 따라 공정 적당한 거미를 위하여 청구사안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고자			
2. 별심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예를 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예결안목별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에 게 통로예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상 부	1. 조 예 안 1부 2. 제작이용 1부 3. 관 계 로 본 1부 4. 세 호 1234.91 - 211(76.6.4)로 1부 끝.		
*제2안			
승 신 국 무 총 리			
장 소 행정로부시장			

조례

정서
관인
발송

제 1 부 1. 2. 3.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제출 별첨과 같이 제정하고 자 서울특별시행정예결안특별로 시부 부칙 제정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신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부 1. 조 목 안 2부
- 2. 제정안 2부
- 3. 근거조문 2부 끝.

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 at the bottom of the page.

(조 록)

서울특별시조례 제 10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며, 위원은 기획관리관, 제1부국장, 세무과장, 세무조사과장 및 구청 시민생활국장등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명하는 1인이 된다.

제 3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된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의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회는 제1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하고 서울특별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 중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의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의결의 방식) (1)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목적에 관한 설문지 또는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제1부청구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양고인에게 관계 행정사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6조 (관사 등) (1)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사 및 서기
장관등을 둘 수 있다.

(2) 관사는 세무조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세무조사과소관 계장으로 한다.

(3) 관사는 회계에 통달하여 할일할 수 있다.

제 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무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의 예외가 상구 및 상부상구 수안을 심의 위원회에
회부시켜 관공회심사와 공임이 풍부한 관계관으로 하여금
심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또한 공평 특별한 공정을
하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조처를 제정하고자 함.

서 울 특 보 시

세조 1234,91- 2 //

1976. 6. 4.

수신 기획관리관

참조 법무담당관실

제목 지방세 심의 위원회 규칙 제정 의의

담	당	법 제지장	법무담당관	서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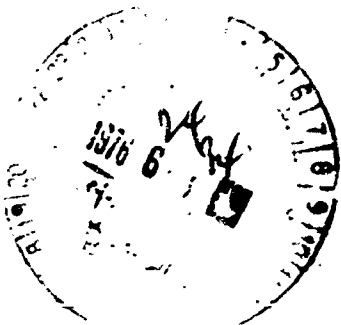
1.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외 3의 규정 및 지방세 제조사업 심사 사무처
규정 (내무부 훈령 제470호) 제10조에 의거

2.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별지안을 제출하
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0. 제정 사유서

0. 제정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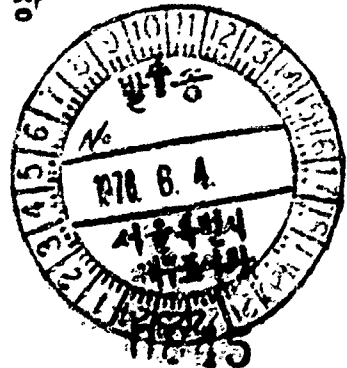
0. 지방세 심의 위원회 규정 (안). 5쪽.



지방행정사무관

[Handwritten Signature]

서 부 조 사 과 장



제 정 사 유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관으로 하여금 재조사
청구 심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법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
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0. 제정 근거 법령

- 1) 지방세법 시행령제46조 외3외 규정 (76년 신설)
- 2) 내무부 훈령 제470호 (76. 5. 7)에 의한 지방세 재조사및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地方稅再調查與審查事務處理規程

內 務 部

地方稅再調査 및 審査事務處理規程

第 1 章 通 則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市長, 郡守, 道知事 (서울特別市長과 釜山市長을 合稱한다 以下 같다) 및 內務部 長官이 地方稅法 (以下「法」이라 한다) 第58條의 規程에 依한 再調査 請求 및 審査請求 (以下「再調査請求等」이라 한다) 와 監查院法 第3章의 規程에 依한 審査請求 (以下「監查院審査請求」라 한다) 에 關한 事務를 迅速 公正하게 合理的으로 處理토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不告不理, 不利益変更禁止) ① 再調査 請求等을 審理함에 있어 請求人이 具體적으로 다루어야 할 事項은 이를 審理하여 아니한다.

① 再調査請求等を 決定함에 있어 再調査請求等を 한
 處分보다 請求人에게 不利益이 되는 決定을 하지 못
 한다. 다만, 地方自治法 第 109 條의 規定에 依한 處
 분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 3 條 (提出官署를 그르친 請求의 處理) 請求人이 再
 調査請求 等の 提出官署를 그르쳤을 경우에는 이를
 接受한 官署의 長은 提出하여야 할 官署의 長에게
 遲滯없이 移送하고, 그 뜻을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4 條 (書類의 送達方法) ① 再調査請求 等の 決定書
 및 補正要求書나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再調査請
 求 等に 因한 書類의 送達은 郵便配達証明이 되는
 登記郵便에 依하여야 한다. 다만 請求人이 書類의 直
 接交付를 要求할 때에는 送達證에 署名捺印하게 하고,
 交付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受領證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交付送達된 書類名

2. 送達場所

3. 送達年月日

4. 受領者의 住所, 住民登錄番号 및 姓名

第5條 (決裁에 對한 處理顯末報告) ①審査請求 (對稅에

對한 再調査請求를 包含한다) 에 對한 取消 또는 更正의

決裁通知를 받은 市長, 郡守, 區庁長은 그 決裁文에

따라 記載되어 法律第45條의 規定에 依한 措置를 취

고 別紙 第1号書式에 依하여 決裁權者에게 處理顯末

報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의 決裁에

對한 處理顯末報告는 通知書를 經由하여야 한다.

②審査院審査請求에 對한 取消 또는 更正의 決裁

通知를 받은 市長, 郡守, 區庁長은 第1項에 準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다만, 處理續末報告書는 市長, 郡守, 區庁長이 通知書에게 3부를, 通知書는 內務部長官에게 2부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6條 (寫本의 作成方法) 이 規程에 依하여 再調査 請求 等に 對한 審理資料로 提出하는 寫本의 寫本에는 그 寫本者 等 責任있는 內保公務員이 寫本文書의 余白에 반드시 原本과 相違없다는 文言, 寫本作成年月日 職級 및 姓名을 記入하고, 捺印하여야 한다.

第二章 再調査請求의 處理

第7條 (接受節次) ① 市長, 郡守, 區庁長은 請求人이 直接 또는 郵便에 依하여 再調査請求書를 提出한 때에는 即時 그 正本과 副本 (市, 郡稅의 徵收에는 正本) 을 接受하고, 接受年月日을 明瞭하게 記入하여야 한다. ② 市長, 郡守, 區庁長이 再調査請求書를 接受한 때에는

地方稅法 施行令 (以下 「令」 이라 한다) 第46條 第
6項의 規程에 依한 接受證을 반드시 交付하여야 한
다.

第8條 (交付節次) ①市長, 郡守, 區署長은 第7條의 規程
에 依하여 接受한 課稅 (서울特別市稅 및 釜山市稅
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에 關한 再調査請求書의 正本
에 다음 名稱의 書類를 添附하여 檢附한 日로부터
10日以内 (補正要求를 한 경우에는 그 補正期間을
除사한다) 에 通知事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1. 令第46條 第5項의 規程에 依한 意見書
2. 請求의 對象이 된 處分의 決定決定書, 自選申告
納付書, 調査書 또는 調査復命書, 等의 寫本.

③ 意見書의 內容을 立証할 수 있는 証憑, 其他 處
分을 維持하는데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資料

④ 請求에 對한 意見書에는 不服의 事由, 消滅事實에

제1항 具體的인 請求과 그에 대한 判斷意見, 適用法規
의 條項과 例規通牒, 法規의 解敍 및 適用에 대한
意見 등을 具體的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市長, 郡守, 區庁長이 再調査請求의
全部 또는 一部가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
에는 令 第9條의 規程에 依하여 措置하고, 그 顯末
과 關係書類 寫本을 再調査請求書에 添附하여 道知事
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9條 (要件審理와 補正要求) ① 道知事が 再調査請求를
審理할 때에는 請求의 內容을 審理하기에 앞서 請求
의 要件을 審理하여야 한다.

② 再調査請求가 다음 각호의 1에 該当할 경우에는
請求要件의 不備로 하여 別途 補正要求를 하지 아
나한다.

1. 法 第58條 第1項의 請求期間이 경과한 때

2. 請求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處分의 時

② 다음 各條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市長, 町長, 또는 郡長은 法 第58條 第4項의 規定에 따라 請求人에게 그 補正을 要求하여야 한다.

1. 請求의 書式이 地方稅法 施行規則 第33條의 規定에 該當 書式이 아니거나 第3條의 規定에 該當 所定部數에 未達되게 提出한 時

2. 請求趣旨가 再調査請求書의 記載內容으로 不分明할 時

3. 再調査請求書에 不服事由가 記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記載된 不服事由로서는 請求趣旨에 該當 內容 把握이 不可能할 時

4. 不服事由를 立証할 수 있는 証憑資料의 未備로 判斷이 困難할 時

5. 請求人의 記名捺印이 缺인 時

6. 處分の 通知를 받은 날의 記載가 없을 때

7. 代理人을 選任할 경우에 그 代理人의 权限을 證明하는 書面이 있을 때

8. 第1号 乃至, 第7号와 類似한 事項으로서 補正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

① 遺稅에 関한 再調査請求에 於하여는 第13條 第2項 및 同條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條 (內容審理) ① 請求者가 提示한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은 信憑性과 客觀性이 認定되는 程度에 限하여 이를 採択한다.

② 帳簿의 補遺記帳 有無, 記帳內容의 誠實性 및 信憑性을 鑒定한 課稅処分과 權衡을 正當否와 其他 重要한 事項의 判斷은 經驗法則에 따라 合理性과 客觀

性이 維持되도록 具體的으로 審理하여 信義, 誠實의 原則에 違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請求의 內容을 審理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④道知事(道知事が 任하는 市長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가 再調査請求 또는 審査請求의 內容을 審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地方 稅審査委員會를 構成 兼用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依한 地方稅審査委員會의 組織과 運営에 關하여는 地方稅 審議委員會 規則에 準하여 道知事が 따로 定한다.

第71條 (再調査決定) ①再調査請求는 法第58條의

処理期間内に 決定하여야 한다.

④市長, 郡守 또는 通知事務法 第58條 第2項 各
 項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書에 決定番號를 表示하
 고 決定理由에는 處分の 要旨, 請求趣旨 및 理由, 다
 른이 된 事實과 証拠資料에 對한 判斷, 適用 法令의
 條文等を 明示하여야 한다.

第三章 審査請求의 處理

第12條 (接受節次等) ① 市郡稅에 對한 審査請求는

市長·郡守가, 道稅에 關한 審査請求는 道知事가 第7條의 規定에 準하여 接受하고 市郡稅의 경우는

道知事에게, 道稅의 경우는 內務部長官에게 第8條의 規定에 準하여 各各 이를 送付하여야 한다.

② 審査請求의 經由機關의 長이 令第46條 第5項의 規定에 依한 補正要求를 할 수 있는 경우는 第9條 第3項 第1号 乃至 第3号, 第5号 乃至 第7号의 事由가 있는 경우에 限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審査請求書를 道知事 또는 內務部長官에게 送付하는 때에는 第8條 第1項 各号의 書類 以外에 再調査 請求의 決定書 寫本과 決定理由를 立證할 수 있는 証憑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13條 (要件審理等) ① 審査請求決定權者가 審査請求

書를 接受한 때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準하여
要件 審査를 하여야 하며 同條 第2項 各款의 事由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補正要求를 할 수 있다.

㉠ 審査請求決定權者가 審理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
에는 当該 審査請求의 經由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書類의 謄本 其他 証拠物等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 審査請求의 經由機關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書類 謄本等의 提出을 指示받은 경우에는 特別한
事由가 있는 限 指示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内に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 審査請求에 對한 內容審理에 關하여는 第1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4條 (地方稅審査委員會에 關한 附屬) ㉠ 內務部長官은
審査請求에 對한 內容審理를 完了한 때에는 審査請求
書에 別紙 第2号書式에 依한 審査要求書를 添附하여

地方稅審査委員會 (以下「委員會」라 한다)에 附屬
하여야 한다.

①第1項의 要求書에는 處分의 要旨, 請求趣旨 및 理
由, 再調査決定者의 意見, 다음이 된 事實과 証拠資料
에 對한 判斷, 其他 參考事項等을 明記하여야 한다.

第15條 (審査) ①委員會委員長이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審査要求를 받은 경우에는 7日以内に 委員會를
召集하여 이를 審査하여야 한다.

②委員會에서 審査請求에 對한 審査를 完了한 때에
는 지체없이 別紙 第3號 書式에 依한 審査書로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6條 (審査決定) ①內務部長官은 第15條第2項의 規
定에 依한 報告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審査請求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審査請求決定에 關하여는 第1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四章 監査院 審査請求의 處理

第17條 (接受節次) ① 市長·郡守·區長은 請求人이 監査院 審査請求를 提出한 때에는 正本과 副本 3部를 接受하고 接受年月日을 明瞭하게 記入하여야 하며 請求人에게 接受日附印이 있는 接受証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 請求人이 審査請求書를 所要部數에 未達하게 提出하였거나 第9條第3項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遅延없이 補充 要求를 하여야 한다.

第18條 (送付節次) ① 市長·郡守·區長이 監査院 審査請求書를 接受한 때에는 接受日 날로부터 7日以内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補完期間을 除外한다) 이

審査請求書 正本과 副本 2部를 監査院 審査規則

第3條第1項第2호의 規定에 의한 辨明書와 同辨明書

의 內容을 立証할 수 있는 關係 証憑書類를 各各

添附하여 道知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が 審査請求書를

接受한 경우에는 接受한 날로부터 7日以内に 審査請

求書 正本과 副本에 道知事の 意見書를 添附하여

内務部長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② 内務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接受한 때에는 接受한 날로부터 7日以内に 審査請求

書 正本에 市長·郡守·區長의 辨明書와 内務

部長官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監査院에 送付하여

야 한다.

① 審査請求의 対象이 되는 處分이 監査院法에
 依하여 更正要求가 된 處分일 경우에는 監
 査院長의 更正要求書 寫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19條 (更正措置) ① 監査院 審査請求의 內容이

監査院 審査規則 第3條第1項第1호에 該當하는

경우 (第18條 第4項에 該當하는 경우를 除

외 한다) 에는 市長 · 郡守 · 區庁長 · 道知事 또는

內務部長官은 請求의 対象이 된 處分을 更正 措

置한다.

② 市長 · 郡守 · 區庁長이 更正措置를 行 때에는

監査院 審査請求書 正本 및 副本 之部에 各各

更正措置를 行 關係書類 寫本을 添附하여 道知

후에게 서함과 동시에 請求人에게 그 뜻을 通知 하여야 한다.

① 道知事 또는 內務部長官이 第1項의 更正措置를 한 경우에는 市長·郡守·區庁長에게 措置指示를 하고 更正措置關係書類·原本을 監査院 審査請求書에 添附하여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送付함과 동시에 그 뜻을 請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0條(決定書 送付順次) ① 內務部長官은 監査院長으로 부터 送付받은 審査決定書 謄本을 道知事에게 送付하고 道知事は 이를 市長·郡守·區庁長에게 送付한다.

② 審査決定書 謄本을 送付받은 市長·郡守·區庁長은 決定의 內容에 따라 監査院法 第44條의 規定에 依하여 措置한다.

第五章 其他

第21條 (台帳備置) 內務部長官、道知事、市長、郡守

區庁長은 別紙 書式에 依한 再調査請求 審査請求

監査院審査請求의 送付處理台帳 (別紙 第4号書式) 再

調査請求 및 審査請求處理台帳 (別紙 第5号書式) 審

査請求處理台帳 (別紙 第6号書式) 를 備置整理하

여야 한다.

第22條 (處理遲延과 責任)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

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民願業務의 處理遲延에 準하

여 關係公務員에게 民願事務處理規程 第18條의 規定

에 依한 責任을 물을 수 있다. 다만,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8條第1項 第9條第4項 第12條第1項 第13條

第3項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한 送付期向을

解怠한 경우

二 第8條第1項 第12條第4項 第13條第2項의 規程

定外 依此 添附書類를 漏落시키거나 그 添附書類

의 作成이 不誠實하여 請求內容의 審理를 할 수

없다고 認定될 때

附 則

이 規程은 2016. 5. 7 부터 施行한다.

(제 1 호)

() 시 · 군 · 구

(전화)

분류기호

경 우

수 신

발신 시장·군수·구청장 (인)

제 목

(감사원·심사·심사·재조사) 청구결정처리권 말 보고

(감사원·심사·심사·재조사) 청구결정(결정내역 호)에

대한 처리 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 인	성 명	주인등록번호							
	주소 상 호								
	상 호								
년도 기분	세 목	청구결정		정정(회소)결정		취강액		합부 년결실	비고
		과포	세액	과포	세액	과포	세액		

첨부: 조서사관공제회 시본 부 끝

지방세심의위원회집의요구서

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	영업장 또는주소				
인	성호				
처	분처				
당초 신청	년도기준		세목	고지(통지) 년월일	
	과세표준		세액	과표산출 근거	별지
재조사 청구	자본의동지출 받은날			보정요구년월일	
	과표상정 년월일			보정요구기간	
청구	결정구분			보정이행년월일	
	결정이유	별지		재조사청구결정 통지년월일	
심사청구결정(안)		별지			

위자로 부러 19 별지와 같이 심사청구가 있었
 기에 상기와 같이 재조사 청구 결정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
 을 붙여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배무부장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 의 서

성명	심영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름	심영		
진분	병		
현상	주근		
결정	이유	별	첨

위자가 19... 세기한 심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되었기 지방세심사위원회의
 개최 제 4호의 결정에 의해서 보고 합니다

19

지방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사무부장관 귀하

제 5호

제조사 청구 처리 대장
심사 청구

청구인			청구 성명 성명	청구 처분청	청구내용				결정내용			특 이 사항	
주소	상호	성명			연도	시	목	과목	세 의	신청 일	결정 일		결정 내 용

심사청구처리카 - 드

심사청구 인	성명				주인등후번호
	성명				
심사청구 연도	연도	기분	사루	고지(특지)	
	과세포진		사액	사분청	
심사청구 연도	연도	기분	사루	고지(특지)	
	과세포진		사액	사분청	
심사청구 연도	연도	기분	사루	고지(특지)	
	과세포진		사액	사분청	
심사청구 연도	연도	기분	사루	고지(특지)	
	과세포진		사액	사분청	

심사청구결정내용

내용 상 기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결정수	결정비율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결정수	결정비율
심사청구 연도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결정수	결정비율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결정수	결정비율
심사청구 연도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결정수	결정비율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결정수	결정비율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심사청구결정			결정수	
심사청구결정			결정비율	
심사청구결정			결정액	
심사청구결정			결정수	
심사청구결정			결정비율	